

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

제2조의3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가. 별표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

- 1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·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
- 2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
- 3) 광유류(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)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
- 4)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
- 5)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
- 6) 공장 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

영하는 공장

나.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 따른

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해당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
량의 범위 내에서 설립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

1) 비점오염원 및 사고로 유출되는 오수·폐수 등 점오염원이 전
량 상수원이 없는 수계에 자연유하로 배출되는 공장

2)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상수원이 있는 수계에까지
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

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이행대책을 수립한 공장

제3조제2호다목 중 “것”을 “것(제2조의3제2호나목에 따른 공장은 제외
한다)”으로 한다

제3조의4제4항 중 “법 제14조의3제3항”을 “법 제14조의3제1항”으로 하
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”를 “변경
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”로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)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양성
과정은 집체교육과 실무교육을 포함하며, 교과편성 등 세부사항은 환
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자격시험에 합격한”을 “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
건을 갖춘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미리 정하여 고시한”을 “제17조의3에 따른”으로 하고,

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신규 및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.

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은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5조의2제5항”을 “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5항”으로, “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”을 “자격증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미리 검사하여 확인한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할 수 있다.

별표 1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수도꼭지,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2의4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“제14조의3제4항”을 “법 제14조의3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위반행위란 중 “제14조의3제5항”을 “법 제14조의3제5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절수등급 표시를 위한 변기의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이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측정한 시험성적서의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하고, 수도꼭지의 최대토수유량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8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상하수도 관련 분야”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, 건설 배관분야, 기계제작, 기계장비설비·설치,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의2, 제15조제1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,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(신규 / 재발급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3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

신청인	성명(한글)	주민등록번호
	수험번호(자격시험 합격자)	전화번호(휴대전화)
	주민등록상 주소	
	배송지 주소	

신청 내용	자격 등급	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[] 2급[] 3급[]		
	구 분	신규 발급 []	재발급 []	재발급 신청 사유
	재발급 필요 정보	최초 발급 자격증 번호		최초 발급 연월일

「수도법」 제24조제1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자격시험 합격자(신규)	제출서류 없음		수수료 10,000원
	양성 과정 이수자	신규 발급	1.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(3.5cm×4.5cm) 1장 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3.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.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증 1부	
	재발급		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(3.5cm×4.5cm) 1장	

처리절차



신청인

한국상하수도협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3(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)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.	제2조의3(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:</u> <u>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</u> <u>가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·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</u>	2. <u>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</u> <u>가. 별표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</u> 1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·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2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3) 광유류(석유 등 광물성

나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
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
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
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
대상이 아닌 공장

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)
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
를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
9호 또는 제13호의 공공
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
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
여 처리하는 공장

4)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
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
장

5)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
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
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

6) 공장 설립지역에 6개월
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
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

나.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
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
의2에 따른 기존 산업단지
안에서 해당 산업단지의
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
의 범위 내에서 설립하는
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
갖춘 공장

1) 비점오염원 및 사고로
유출되는 오수·폐수 등
점오염원이 전량 상수원
이 없는 수계에 자연유하
로 배출되는 공장

다. 광유류(석유 등 광물성원
료로부터 얻어진 기름)가
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
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
또는 제13호의 공공하수처
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
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
공장

라.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
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

마.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
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
제곱미터 미만인 공장

바. 공장 설립지역에 6개월
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
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

제3조(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
하는 공장의 준수사항) 법 제7
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
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
의 구분과 같다.

2)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
수 오염이 상수원이 있는
수계에까지 영향을 미치
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
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
· 군수 · 구청장과 협의
하여 환경보전이행대책
을 수립한 공장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제3조(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
하는 공장의 준수사항) -----

-----.

1. (생 략)

2.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

가.·나. (생 략)

다.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
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
것

제3조의4(검사기관의 지정 절차
등) ① ~ ③ (생 략)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
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3항
에 따른 검사기관(이하 “검사기
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는 경
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
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
발급해야 한다.

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
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
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
려면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별
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
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
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
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·2. (생 략)

<신 설>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
것(제2조의3제2호나목에
따른 공장은 제외한다)

제3조의4(검사기관의 지정 절차
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법 제14조의3제1항-

-----.

⑤ -----

---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
일 이내에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정수시설운영관리사
양성과정) 법 제24조제1항에 따
른 양성과정은 집체교육과 실무

제15조(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) ①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제17조의3(수수료) 한국상하수도 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

교육을 포함하며, 교과편성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5조(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) ①-----
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제17조의3에 따른 -----
-----.

④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신규 및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.

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은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3(수수료) -----
-----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5항 ---
--- 자격증-----

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제22조의3(대형건축물등의 소유
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
치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
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
또는 시설(이하 “대형건축물등”
이라 한다)의 소유자 또는 관리
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
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
소하여야 하고, 월 1회 이상 저
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
따라 점검하여야 한다. <단서
신설>

② ~ ⑦ (생략)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3(대형건축물등의 소유
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
치 등) ① -----

-----. 다만,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
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
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
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반수
도사업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
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
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미리
검사하여 확인한 후 2개월의 범
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
할 수 있다.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